아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호

2024년도 제2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4년도 제2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아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농업기계관리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1명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임대농업기계 유지관리(자체수리 등) -임대농업기계 입출고 -임대사업소 장비 및 물품 유지관리 -영농현장 출동 기동수리 -콩정선 선별장 운영 -농번기 6개월(4~6월, 9~11월) 휴일 비상근무 -임대사업소 민원실 운영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농촌자원과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다른 법령(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치료감호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근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호의 <다른 법률 사례>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 **부패방지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 용 요 건
농업기계관리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농업기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자로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근무 경력인정 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농업기계 분야 관련(정비,수리 등)** 근무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필수요건>** ○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농업기계정비기능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의 자격 소지자 **<우대요건>** ○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계 관련 근무 경력자

※근무경력은 1일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종일근무가 아닐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합니다.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경력 산정)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심사기준 >
① 우대요건 ②업무수행능력(경력기간 등) ③자기소개서(창의력·의지력·성장가능성 등) 등

나. 2차시험 : 적격성 심사(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 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11.(월) ~ 3. 13.(수)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

❍ 접수장소 :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등기우편 및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3. 20.(수) 예정,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

다. 2차 시험(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참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추후 별도 공고)

❍ 아산시 시 홈페이지 게시

6. 제출 서류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함**
- 주소 (우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4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 18:00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접수 시 스테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서류 확인 및 목록표 순으로 정렬 후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가급: 10,000원, 나~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 **(방문접수)** 아산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아산시청 민원과)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 동봉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 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2장 이내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A4용지 3장 이내	필수
6. 최종 학력 졸업(재학) 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모든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6-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 (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6-2. 논문요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 석사 학위 이상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상근/비상근 여부, 비상근 시 1일, 1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불인정 **(ex. 근로계약서 등)**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및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경력과 관련된 사업장(회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제출	필수
9.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원본 지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필수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필수
1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9호 서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지원자 본인의 사전 확인 절차임	필수
13. 기타 증빙서류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 분량이 많을 경우 경우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해당자만 제출

7.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여건 및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

나.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상정

(단위: 천원)

임용예정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8,248	41,551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별도 지급 함(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수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족수당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다. 복 무

❍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아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 총무과 인사팀 (☎ 041-540-2226)

- 임용예정분야 관련

임용예정 분야	연락처
농업기계관리	농업기계팀장 041-537-3825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